

 신안산대학교	선교지원센터 운영 규정	규정번호	3-1-25
		제정일자	2024. 3. 20.
		개정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선교지원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선교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의 각호의 기독교 관련 사역들을 주관 및 지원한다.

1. 기독교 관련 수업 지원
2. 기독교 관련 모임 및 행사 주관
3. 교직원, 학생 신앙지도
4. 선교장학금 지원
5. 단기 선교단 훈련 및 파송 주관
6. 지역교회와의 협력 주관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구성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선교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협력목사를 둔다. 협력목사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③ 센터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을 협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④ 센터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⑤ 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의 ‘교내 외부 강사 강의료 지급 지침’에 따른다.

제3장 선교지원센터위원회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.
- ③ 위원 위촉은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간사는 선교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은 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달성을 수 있도록 제안 및 심의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사업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 개시 전 1회 실시한다.
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3분의 1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3. 의결은 위원회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